

「지스타(G-star)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경북 지역 벤처·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북도·지자체, 도내 중견·성공기업, 지역 대학이 공동 출자하여 경북 대표 벤처 펀드 조성
-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6회계연도(본예산)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「지스타(G-star) 경북의 저력 펀드」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### 1) 출자 개요

#### 가) 대상기관

기관명	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	파트너스라운지(유)
대표	유주현	박상태
설립일	2014.12.17.	2020.06.05.
본사	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	경북 포항시 북구 융합기술로 66

#### 나) 출자예정액 : 10억원

- '25년(2억원), '26년(3억원), '27년(3억원), '28년(2억원)

#### 다) 출자근거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
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

### 2) 사업개요

#### 가) 조 합 명 : 지스타(G-star) 경북의 저력 펀드

- 투자조합 결성일 ('25. 9. 24.)
- 결성근거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

#### 나) 운 용 사 : 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, 파트너스라운지(유) 공동 운영

#### 다) 출자구조 : 민·관(경북도, 기초지자체) 연합출자

#### 라) 출 자 자

- 업무집행조합원 : 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, 파트너스라운지(유)
- 유한책임조합원 : 경북도·기초지자체, 지역기업, 지역대학

#### 마) 조합결성액 : 100억원 \* 총 결성액 및 투자자 변경될 수 있음

- 연도별출자계획

(단위:억원)

구 분	출자기관	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	합 계	100	20	30	30	20
GF(운용사)	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	3	0.6	0.9	0.9	0.6
	파트너스라운지(유)	5	1	1.5	1.5	1
LP(출자자)	경상북도	10	2	3	3	2
	포항시	10	2	3	3	2
	구미시	10	2	3	3	2
	경산시	10	2	3	3	2
	경주시	10	2	3	3	2
	안동시	10	2	3	3	2
	칠곡군	10	2	3	3	2
	지역 중견기업·선배기업	21	4.2	6.3	6.3	4.2
	지역대학	1	0.2	0.3	0.3	0.2

바) 존속기간 : 8년(투자4년, 회수4년)

사) 투자대상 : 초격차\* · 경북 중점 산업\*\* 분야 딥테크 초기창업기업

\* 초격차 분야

①시스템반도체 ②바이오·헬스 ③미래 모빌리티 ④친환경·에너지 ⑤로봇  
⑥빅데이터·인공지능(AI) ⑦사이버보안·네트워크 ⑧우주항공·해양 ⑨차세대원전 ⑩양자기술

\*\* 경북 중점 산업 분야

경북도, 기초지자체, 출자 참여 선배기업 의사 적극 반영

아) 기대효과

- 경북 도내 초격차 · 중점 산업 분야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

### 3) 출자 필요성

- 가)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·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나) 기계, 자동차, 디스플레이, 모바일 등의 기존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
- 다)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·벤처기업 경쟁력 강화

### 라. 참고사항

#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제50조, 제71조제4항
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# ○ 본 출자안은

- 경북 지역 벤처 및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북도, 포항시, 구미시 등 6개의 도내 지자체 및 중견·선배기업, 지역 대학이 공동 출자하는 경북 대표 벤처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초격차 분야 및 경북 중점 산업 분야의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, 미래 유망사업과 초기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에 소재한 중소·벤처기업에 구미시에서 출자한 투자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충분한 협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

- 펀드 조합결성액(펀드 총액)이 작년에는 170억 이었으나, 올해 100억으로 줄어들었음. 펀드 조성금액은 출자자들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수 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펀드의 투자 목적과 회수·관리 등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람.
- 또한, 지난달에 결성된 신생펀드인만큼 투자계획 등을 운용사와 협의하여 구미시 기업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